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8일, 이성윤의원 등 2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22.)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3.) 상정, 심사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12.3.)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6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윤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되었음. 그러나 3년도 못

채운 1,060일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등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김건희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수수 등의 의혹은 물론,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명품백 등 금품 수수 등 술한 범죄혐의가 쏟아지는 당사자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방패삼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없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누려 왔음. 또한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킴.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불법적 구명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음.

무엇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킨 주범임.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고, 이는 윤석열 파면의 핵심 사유이자 파면 후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아 마땅한 이유로 작용함.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임기 전부터 재임기간 내내, 그리고 임기 끝까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되었고 그 중심에

는 언제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있었음.

한편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범죄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진행으로 내란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임.

이에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둬으로써, 윤석열·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권력형 비리’ 범죄를 뿌리뽑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화답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국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병섭)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당시 해당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더

불어 기존의 찬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 (김용민 위원)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의부는 설치되어 있고, 제정안은 이러한 합의부를 1개 또는 2개 정도 늘리는 형태임
- (나경원 위원) 사실상 유죄 판결을 위하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특별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할 것임
- (박균택 위원)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민주성, 책임성도 중요함.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맞는 사법부가 되어야 함
- (서영교 위원) 구속취소, 재판 지연에 대한 법원의 대책이 있는지, 룬싸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징계 절차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전현희 위원)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 이는 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 헌법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가능함. 다만 법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함
- (조배숙 위원)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을 외부의 추천위원회를 통하

여 하는 방식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향후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주진우 위원) 재판부 구성을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까지 여당 추천으로 이루어지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최혁진 위원) 현재의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판결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함. 사법부의 자정능력 상실, 제식구 감싸기 등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추미애 위원장)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것이 학설의 의견이고, 현재로서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임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곽규택 위원) 특정한 사건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위헌임
- (최혁진 위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꼬리 자르기를 위한 구

속영장 기각 의도가 있어 보이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함

- (박균택 위원)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을 계속하여 기각하는 등의 사법부의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제정안은 필요함
- (전현희 위원)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한번 기각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내란 종식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였음.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위헌인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나경원 위원)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대안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임. 대상사건이 불명확해 보임.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임
- (이성윤 위원) 특검의 영장을 계속적으로 기각하는 등 내란 청산에 사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김기표 위원) 현직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므로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김용민 위원) 대검에 대법원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법원이 각종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음.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고 판사를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님. 헌법 제101조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음. 현직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음. 진행 중인 사건도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제1심의 경우에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추미애 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담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법무부장관의 추천이 추가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서영교 위원)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내용임. 영장을 계속적으로 기각하고 있으므로 영장전담법관 필요함

7.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과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의결함.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